

제주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단639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씨

담당변호사 조지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주영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호

담당변호사 장준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변론 종결 2024. 4. 19.

판결 선고 2024. 5. 3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30. 체결된 증여계약은 114,419,906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4,419,90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 11. 16.	40,000,000원	21. 5. 16.
2	20. 11. 18.	60,000,000원	21. 2. 16.
3	20. 11. 25.	50,000,000원	20. 12. 28.
4	21. 1. 12.	30,000,000원	21. 2. 12.
5	21. 10. 31.	40,000,000원	21. 12. 31.

2) C은 원금 합계 99,035,496원 및 이에 대한 2023. 4. 7.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4. 1. 16. 'C은 원고에게 99,035,469원 및 이에 대한 2023.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1) C과 피고는 2022. 11. 3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2. 12. 2. 접수 제923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9. 6. 25. 채권최고액을 6억 9,300만 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담보채무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2022. 11. 30.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595,136,392원이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C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과 범위

가.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11. 30.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1,249,501,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각 가액의 합계도 같은 가액으로 추인된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주식회사 D 명의의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이 595,136,39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654,365,008원(= 1,249,501,400원 - 595,136,392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된다. 그리고 원고의 C에 대한 대부금채권 원리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114,419,906원(= 원금 99,035,469원 + 2023. 4. 7.부터 2024. 4. 19.까지 원금 99,035,469원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5,384,410원1))인 사실은 계산상 분명하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114,419,9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14,419,90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란주

별지

1) 원 이하 버림